EUIPO의 저작권 정보 인프라 구축 논의와 AI 환경에서의 시사점

김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1. 들어가며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2026년 5월 28일 「Mapping of EU Databases and Metadata Standards Providing Information on Copyright-Protected Works」 보고서(이하 "본 보고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1]

본 보고서는 저작물, 권리자, 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여러 공공·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른 식별자와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권리자 식별, 이용 허락, 보상, 분쟁 해결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 AI 환경에서의 권리유보 표시, 라이선싱, 권리자 식별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서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출범한 EUIPO 저작권지식센터(EUIPO Copyright Knowledge Centre, ECKC)[2]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EU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고도화된 검색 서비스인 'CopyrightView'[3]의 개발 타당성을 탐색하기 위한

1. EUIPO, Mapping of EU Databases and Metadata Standards Providing Information on Copyright-Protected Works, May 2026. (이하 "EUIPO 보고서"라 한다) Available at 〈https://www.euipo.europa.eu/en/publications/mapping-of-eu-databases-and-metadata-standards-providing-information-on-copyright-protected-works (2026.8.18.확인)〉.
2. EUIPO 저작권 지식 센터(Copyright Knowledge Centre)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2025년 11월에 공식 출범한 유럽 저작권 정보의 통합 허브(Single Gateway)로, 디지털 시대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부상 속에서 창작자, 시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저작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vailable at 〈https://www.euipo.europa.eu/en/copyright-knowledge-centre (2026.8.18. 확인)〉.
3. 'EUIPO 전략 계획 2030'은 '저작권 지원 서비스 강화'라는 핵심 이니셔티브에 따라 'CopyrightView'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CopyrightView는 저작권, 저작자 및 저작물의 권리상태(예: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지 여부, 접근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급검색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시스템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원 데이터는 각 기관에 그대로 둔 채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검색·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증적 · 분석적 기초 작업의 성격도 갖는다. EUIPO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U 차원의 저작권 정보 접근 · 검색 기반인 CopyrightView 구상과 연계하여, 저작권 정보의 신뢰성 · 상호운용성 · 기계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즉 저작물 · 권리자 정보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있고, EUIPO는 이를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기보다 기존 정보원을 연결하여 검색 · 대조할 수 있는 CopyrightView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AI 환경에서 권리자 식별과 권리유보 정보의 전달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검토한다.

2. 2026 EUIPO 보고서 주요 내용

2.1. 배경 및 목표

본 보고서는 저작권 메타데이터 등 저작권 정보와 관련하여 일관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것을 유럽(및 세계) 저작권 체계의 핵심 문제로 진단한다.[4] EU에는 저작물(및 저작인접물), 저작자 또는 권리자에 관한 단일한 정보 소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데이터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질적 · 비호환적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분산되어 있다.[5]

이러한 파편화의 구조적 배경은 베른협약상 무방식주의에서 비롯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방식 요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등록은 권리발생 요건이 아니라 증빙 및 행정적 목적에 한정된다. 그 결과 본 보고서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저작권 메타데이터는 권리 귀속 · 라이선싱 · 집행 · 보상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생성되고 표준화가 미흡하며 시스템 간 상호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유사한 목적(자발적 저작권 등록, 집중관리, 법정 납본, 문화유산 접근 등)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조차 상호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6]

이러한 문제는 AI, 특히 생성형AI(GenAI)의 발전으로 심화된다. 저작물의 식별, 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TDM) 옵트아웃의 시행, AI 학습데이터 출처, 창작자에 대한

4. EUIPO 보고서, Abstract/Executive Summary, Part 1 – Purpose and context.
5. EUIPO 보고서, 1. Background.
6. EUIPO 보고서, Executive Summary – Problem statement.

공정한 보상 등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기계 판독 가능한 저작권 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7]

본 보고서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① EU 내 기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및 메타데이터 인프라의 파악, ② 유럽의 맥락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정보 유형 및 메타데이터 표준 분석, ③ 기존 국가 · EU 데이터베이스를 상호연결하는 CopyrightView의 편익 파악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초 마련이다.[8] 대상 부문은 영화 · TV, 음악, 출판(도서 · 저널 · 언론), 사진,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AI 관련 포함), 문화유산 기관 등 주요 창작 부문을 포괄한다.[9]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현장 조사, 분석 · 보고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10] 문헌 연구는 ① 데이터 거버넌스 · 법체계, ② 법적 함의 · 요건, ③ 저작권 메타데이터 개념, ④ 기술표준 · 해결책, ⑤ 식별자 · 메타데이터 스키마 등 다섯 가지 상호연관 주제를 축으로, 개념적 명확성 · 운영 실현가능성 · 상호운용성 영향의 세 가지 틀을 적용하였다.[11]

현장 조사는 2025년 8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31개 기관(구조화 면접 28건, 비구조화 면접 3건)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성은 민간 20개 · 공공 11개, EU 차원 6개 · 글로벌 6개 · 10개 회원국 소재 19개 기관이었다.[12] 다만 본 보고서는 표본 규모의 한계상 결과를 정량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 제약 · 기회의 식별에 방점을 둔다.[13]

2.2. 법체계 및 데이터 특징

(1) 법적 프레임워크

EU 법제는 기술중립성(technical neutrality)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 규율에 메타데이터 관련 의무를 점차 내재화하고 있다.[14]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EUIPO 보고서, Executive Summary – Problem statement; §1.1.2.
8. EUIPO 보고서, 1.3 Objectives of the study.
9. EUIPO 보고서, 1.3; Executive Summary – Objectives and scope.
10. EUIPO 보고서, 1.4 Methodology.
11. EUIPO 보고서, 1.4.1 Desk research.
12. EUIPO 보고서, 1.4.2 Field research.
13. EUIPO 보고서, 1.4.2 – Limitations of the findings; §3 서두.
14. EUIPO 보고서, 2.1 Legal framework.

〈표〉 주요 법제 내용[15]

구분	주요내용
정보사회(InfoSoc)지침 (2001/29/EC)	- 권리관리정보(RMI,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의 개념을 정의하고, RMI의 무단 제거 · 변경을 금지함(제7조(1)) - 다만 RMI의 부착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고, 시장 행위자가 부착한 정보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임(제16조~제18조, 제24조~제27조)
집중관리(CRM) 지침 (2014/26/EU)	-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CMO)에게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유 식별자 사용, 오류 정정, 회원에 대한 이용 · 수익 정보의 정기적 보고 의무 등 구체적 데이터 책무를 부과함 - 정확성 · 적시성 · 완전성 · 상호운용성의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을 규정함 (제16조~제18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CDSM) 지침 (2019/790)	- 투명성 의무: 저작자는 이용자로부터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적어도 연 1회) 받아야 함(제19조) - 비연구 목적의 TDM 옵트아웃: 온라인에서 공개된 콘텐츠의 경우,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가 권리 유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제4조)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 :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OCSSP)은 저작권자로부터 콘텐츠 사용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저작권자는 플랫폼에 자신의 저작물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 참조 파일, 식별자 또는 기타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 함(제17조)
인공지능법(AI Act) (2024/1689)	-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옵트아웃(opt-out) 권리 존중을 포함하여 EU 저작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제53조(1)(C)) - 범용 AI 실천 규범(Code of Practice for General-Purpose AI)의 저작권 관련 조치 중 하나는 '권리 유보 사항 준수'를 포함하고 있음

즉 이처럼 일정 부분 법령에 메타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건과 인센티브가 규정됨으로써, 법령은 메타데이터 관련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16]

위 규정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주체들이 이용 방식에 대한 이용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CDSM) 지침(2019/790)의 제4조(비연구목적 TDM 옵트아웃,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 요구), 제15조(언론출판물 권리),

15. EUIPO 보고서, 2.1.
16. EUIPO 보고서, 2.1.

제17조(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 제18~20조(적절 · 비례 · 투명한 보상), 제19조(투명성 의무) 등은 실질적으로 메타데이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17]

(2) 저작권 메타데이터의 개념

RMI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① 식별 메타데이터(저작물 · 이형 · 이해관계자를 고유하게 식별; ISBN · ISWC · ISAN · ISNI 등), ② 권리 메타데이터 (저작자 · 소유 · 라이선스 조건 · 허용 이용 · 제한을 기록).[18] 나아가 본 보고서는 서술적(descriptive) 메타데이터, 이용(usage) 메타데이터, 관리 · 출처 메타데이터, 진정성 · 출처 메타데이터를 보완적 범주로 강조한다.[19]

특히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의 연구를 인용하여[20] 메타데이터를 개념화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메타데이터는 단지 '중립적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식별된 행위자의 '주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메타데이터를 '누군가가 두 참조 대상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각 메타데이터 항목은 저작물과 그 저작자, 또는 녹음물과 그 제작자와 같이 두 개체 간의 연결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적 · 출처 메타데이터(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주장했는가)는 정보의 신뢰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21] 이러한 개념화는 RMI가 삭제나 위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EU 법규의 인정과 밀접하게 부합하며, 지속적 식별자와 출처 메타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인프라에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준다.

(3) 기술표준: 식별자와 스키마

식별자는 상호운용의 전제조건이다. 본 보고서는 식별자를 저작물 · 녹음물 · 출판물 등 '콘텐츠 자체'에 붙이는 "자산 식별자"와 저작자 · 실연자 · 출판사 등 '사람이나 조직'에 붙이는 "행위자 식별자"로 구분한다.

17. EUIPO 보고서, 2.1 (CDSM 지침 제4 · 15 · 17 · 19조 등).
18. EUIPO 보고서, 2.2; Figure 1.
19. EUIPO 보고서, 2.2; Figure 2.
20. IFRRO, Identifier and metadata standards in the publishing industry, 2021 online accessed on 29.12.2025.
21. 위 보고서, §2.2 (IFRRO, Identifier and metadata standards in the publishing industry, 2021 인용).

〈그림〉 분야별 식별자 개요[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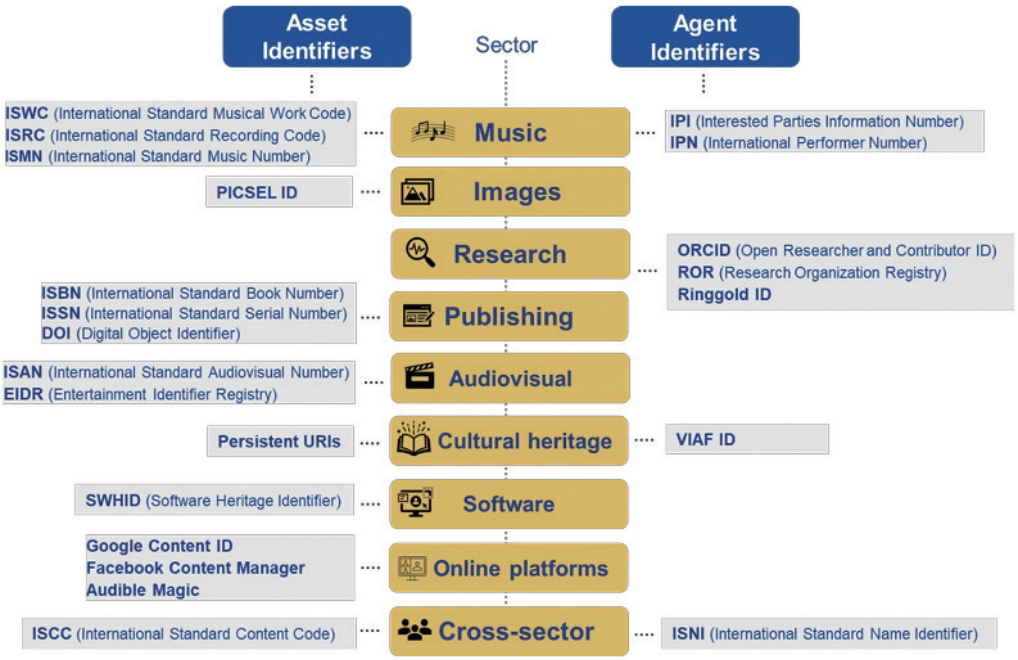

그리고 식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권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창작자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의 상당수는, 결국 모두가 함께 쓰는 공통 식별자 즉 공유 식별자가 부재하여 발생하므로 상호운용성은 공유 식별자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둘째, 등록기반 식별자와 콘텐츠 파생 식별자는 서로 다른 필요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등록기반 식별자(registry-based)는 ISBN · DOI처럼 중앙 발급기관이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위 있는 관리(authority control)와 법적 확실성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콘텐츠 파생 식별자(content-derived)는 콘텐츠 파일 자체를 계산해 번호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ISCC(국제표준콘텐츠코드, 2024년 발표된 ISO 24138임)는 발급기관 없이 누구나 같은 파일에서 같은 코드를 생성할 수 있어 블록체인 ·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다. 나아가 약간 수정된 파일도 유사한 코드를 내놓아 중복 · 2차적 저작물 탐지에 활용될 수 있다.[23]

22. EUIPO 보고서, 2.3.1. Figure 3.
23. 소프트웨어 분야의 SWHID(Software Heritage Identifier, 소프트웨어헤리티지 식별자)도 소스코드를 암호학적으로 해싱한 콘텐츠 파생 식별자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술적 설계 못지않게 '채택 유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아무리 잘 만든 표준도 업계가 안 쓰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ISTC(국제표준텍스트코드)는 어문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ISO 표준이었으나, 업계가 채택하지 않아 2021년 공식 폐지되었다.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표준이라도 공동체의 수용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은 도서 공급망(출판 · 유통 · 서점)에서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전 세계 표준으로 정착하였다.[24]

넷째, 식별자 매핑(mapping, 서로 다른 번호를 연결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저작물이 여러 개의 번호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같은 책이 DOI와 ISBN을 모두 가짐).

다섯째, 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정보(제목 · 저작자 등)를 돌려주는 등록소(registry)와 연결되는 등 식별자가 해석 가능(resolvable)해야 유용하다는 점이다.[25]

한편 식별자가 '번호'라면, 스키마(schema)는 그 정보를 어떤 항목 · 형식으로 기록 · 교환할지 정한 표준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키마의 효과성은 광범위한 채택 여부에 달려 있는데, 현재는 산업 부문별 스키마[26]가 지배적이고, 범용 국제 스키마[27]의 채택은 제한적이다. 본 보고서는 스키마와 관련하여 상호운용성, 매핑 · 변환, 기술적 진화 · 대체, 채택의 중요성을 공통 주제로 제시한다.[28]

나아가 GenAI 대응과 관련하여 "내 콘텐츠를 AI 학습에 쓰지 말라"는 권리유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표현하려는 여러 기술과 관련하여 robots.txt,[29] TDM 예약 프로토콜(TDMRep),[30] C2PA[31] · JPEG Trust,[32] IPTC의 생성형 AI 옵트아웃 권고[33] 등 최근 동향을 정리하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표준의 부재로 인해

24. EUIPO 보고서, 2.3.1; Table 3 (ISTC 2021년 폐지).
25. EUIPO 보고서, 2.3.1 Identifiers.
26.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온라인정보교환, 출판), MARC(Machine-Readable Cataloguing, 기계판독목록, 도서관), DDEX(Digital Data Exchange, 디지털데이터교환, 음악), CISAC CWR(Common Works Registration, 공통저작물등록, 음악 집중관리) 등.
27. Dublin Core(더블린코어, 15개 핵심 항목의 범용 메타데이터), W3C ODRL(Open Digital Rights Language, 개방형디지털권리언어, 이용조건을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표현) 등.
28. EUIPO 보고서, 2.3.2 Metadata schemas; Table 4.
29. Robots Exclusion Protocol / 로봇배제프로토콜: 웹 크롤러의 접근을 차단하는 파일.
30. TDM Reservation Protocol / 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 예약 프로토콜: TDM 권리유보를 표현하는 프로토콜.
31. 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 콘텐츠 출처 · 진정성 연합: 콘텐츠에 위 · 변조 방지 서명으로 출처와 'AI 학습 금지' 지시를 담는 표준.
32. JPEG 신뢰 프레임워크: 이미지의 출처 · 무결성 정보를 암호학적으로 서명해 딥페이크 등에 대응.
33. IPTC(International Press Telecommunications Council)의 생성형 AI 옵트아웃 권고안(2025): 이미지 메타데이터에 AI 학습 거부 의사를 삽입하도록 권고. Avaible at 〈https://iptc.org/std/guidelines/data-mining-opt-out/IPTC-Generative-AI-Opt-Out-Best-Practices.pdf (2026.8.18.확인)〉.

이해관계자들이 다층적 · 중복적 접근(patchwork)에 의존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34]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추세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구조적 요구 사항에 힘입어 표준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의 채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저작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간의 상호 연결 및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 라이츠 데이터 프레임워크(Open Rights Data Framework)'를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2.3.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베이스 지형(Topology)

EU에는 수백 개의 RMI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며, 운영주체별로 ① EU 차원 공공기관 · 이니셔티브(EUIPO 절판저작물 포털,[35]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36] Europeana[37]), ② 개별 국가 도서관 · 부처 · 지식재산청(46개 국립도서관이 45개국에서 운영, 모든 EU 회원국 포함), ③ 집중관리단체(CMO) · 독립관리기관(IME)(2025년 12월 기준 EU집행위 목록에 239개 등재), ④ 기타 이해관계자(CommonsDB 등)로 구분된다.[38]

(2) 특징

데이터베이스는 참조시스템(국립도서관), 마켓플레이스(VLB), 배급자(Getty Images), 교환소(CISAC), 보관소(Software Heritage), 수집자(CMO)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자 · 제휴자 · 일반이용자를 구분하는 권한 기반 접근모델에

34. EUIPO 보고서, 2.4 Recent developments (IPTC Generative AI Opt-Out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2025).
35. 이 공개 온라인 포털은 더 이상 시중에서 구할 수 없지만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임.
36. 권리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철저한 조사 후에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EU 전역의 등록부 역할을 함.
37. 문화유산 메타데이터를 위한 유럽 차원의 통합 및 접근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참여 기관이 소장한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됨. 여기에는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모두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며, 표준화된 권리 표기를 통해 권리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나 권리를 관리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는 않음.
38. EUIPO 보고서, 3.1 Topology; Table 6. 분석 대상 28개 중 5개는 국립도서관, 13개는 CMO 및 관련 대표기구, 나머지 10개는 기술기업 · 상업 데이터베이스 · 출판사 · 등록기관 · 범부문 플랫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였다.

의존한다.[39] 또한 어떤 운영자도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활동하지 않는다.[40]

(3) 콘텐츠

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자는 우선 내부 식별자에 의존하고, 이차적으로 국제 · 산업표준 코드를 사용하며, 지문(fingerprint) · 워터마크의 사용은 소수에 그친다.[41] 부문별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지배적이며, Creative Commons 정보는 저장되나 자동화된 권리처리에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AI 관련 권리유보는 이제 막 고려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42] 한편 eIDAS 2.0(유럽 디지털 신원 프레임워크)[43] 및 유럽 디지털 신원지갑(EUDI)의 도입은 저작자 · 실연자 정보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44]

(4) 사용자

본 연구에서 '사용자'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와 운영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내부 사용자(운영자의 직원 및 계약자 등)와 외부 사용자(권리자, 출판사, 플랫폼, 공공 기관 및 해당되는 경우 일반 대중 등)가 모두 포함된다.

이용자 접근은 주로 아이디 · 비밀번호 기반 인증에 의존하며, 검증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s)은 아직 드물다. API는 식별자 교환에는 널리 쓰이나 완전한 메타데이터 세트 교환에는 활용이 미진하다.[45]

(5) 상호연결

현재 EU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들은 ① 연결 기술 수준이 제각각이고(이메일, API 등), ②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중앙 허브에 의존하는 성형 방식이 지배적이며(진정한 분산 ·

39. EUIPO 보고서, Features.
40. EUIPO 보고서, 3.2.3 Territorial scope.
41. EUIPO 보고서, 3.3.1 Work identifiers; Figure 5.
42. EUIPO 보고서, 3.3.3~3.3.11 요약.
43. 모든 EU 시민과 거주자에게 모바일 'EU 디지털 신원 지갑(EUDI Wallet)'을 제공하는 유럽 연합의 개정된 전자 신원 인증 규정이다.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증,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 증명, 학위 및 의료 정보 등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https://www.european-digital-identity-regulation.com/(2026.7.21 확인)〉.
44. EUIPO 보고서, 3.3.4 (eIDAS 2.0 및 EUDI 지갑).
45. EUIPO 보고서, 3.4 Users.

상호운용 미흡), ③ 그 양상마저 산업 부문별로 크게 달라, 통일된 상호운용 체계가 부재하다.[46] 특히 음악 산업에서는 녹음물이 완전한 저작물 메타데이터 없이 유통되어 보상처리를 복잡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미지 부문 역시 표준 식별자가 없어 상호운용성과 추적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다.[47] 따라서 현재의 상호연결은 기본적 데이터 교환은 가능하게 하나 부문 · 관할을 넘는 원활한 상호운용이나 일관된 메타데이터 사용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48]

2.4. EUIPO 저작권지식센터(Copyright Knowledge Centre, ECKC)와 CopyrightView의 기회 요소

(1) 이해관계자의 기대

인터뷰 대상자들은 ECKC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때 가장 유용하다고 보았다. 우선 "매핑(mapping)의 지속적 유지"다. 어떤 데이터베이스 · 식별자 · 스키마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최신 지도를 계속 갱신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권리자에게 "내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 ·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매핑의 유지가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표준화를 촉진시킬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콘텐츠 그래프 매핑 경험이 음악 · STM(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과학 · 기술 · 의학) 분야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역 간의 지식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저작권이 콘텐츠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질의 콘텐츠 접근을 '촉진'하는 요소임을 알리는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49]

CopyrightView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보다는 참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울수록(lighter) 배포 · 확산이 쉽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CopyrightView 안으로 통째로 '끌어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 방식(참조)이 낫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에 활용하는 것보다, 창작 순간에 권리를 알리고 보호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창작 시점에 가까운 상류(upstream) 데이터에

46. EUIPO 보고서, 3.6 Interconnection.
47. EUIPO 보고서, 3.6; Figure 10(음악), Figure 11(이미지).
48. EUIPO 보고서, 3.6 Interconnection.
49. EUIPO 보고서, 4.1 Stakeholders' expectations.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별도의 조정 계층을 추가하기보다 검증가능한 자격증명과 통제된 식별자를 교환하는 프로토콜로 기능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50]

(2) 잠재적 편익 및 활용사례

본 보고서는 잠재적 편익으로 인코딩 언어에 독립적인 유연하면서도 상호운용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한다. 따라서 관련 권리자의 접근 지원(완전한 권리 정보 제공이 아닌 접근 촉진), TDM 옵트아웃 처리 개선, 국립도서관 데이터베이스의 글로벌 가시성 제고, 중복제거 · 상호주의 지원 등이 예상되는 편익으로 제시되었다.[51]

본 보고서는 추가 논의를 위해 두 가지 초기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정보 찾기"다. "해당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나의 저작물 정보가 서로 다른 권한 · 접근조건을 가진 여러 DB에 흩어져 있어 이용자가 애초에 '어디를 검색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콘텐츠는 워터마크 · 지문으로 그 자체에서 식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 요청자는 정당성 · 권한 부여를 위해 식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정보 매칭"이다. 여러 DB에 걸친 권리관리정보(RMI,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를 대조 · 검증하는 것이다. 단일한 권위 있는 메타데이터 출처가 없어 기록 대조가 기술적으로 복잡 · 고비용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록의 완성 · 검증(국립도서관이 연구 · 교육계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복제거, 이용 모니터링 및 보상, 분쟁해결의 시나리오에서 요청자와 피요청자 양측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52]

(3) 기술적 접근방안

본 보고서는 세 가지 기술적 옵션 즉 ① 워터마크 기반 조회 메커니즘 (메타데이터가 제거된 콘텐츠에서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복원하여 분산원장(DLT)을 통해 일종의 해당 콘텐츠의 모든 정보가 담긴 명세서에 해당하는 정품인증서라 할 수 있는

50. EUIPO 보고서, 4.1.2 Technical aspects.
51. EUIPO 보고서, 4.2 Potential benefits; Figure 13.
52. EUIPO 보고서, 4.3(finding information, matching information).

‘매니페스트(Manifest)’를 조회), ② 계층형 아키텍처(기존 DB를 복제하지 않고 통합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메타-데이터베이스 연합검색), ③ 지문 기반 디스커버리 프로토콜(ISCC 재단의 ISCC Discovery Protocol을 통한 콘텐츠 파생 식별)[53]을 제시한다. 다만 이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명확한 활용사례에 따라 적응·결합 또는 확장될 수 있다.[54]

2.5. 실행 가능성(실효성)

본 보고서는 CopyrightView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제기된 주요 해결 과제는 예산 부족, 인적 자원 부족, 의사결정 절차의 장기화, 운영자 활동 범위의 협소성, 상호연결에 부적합한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 공유의 형식적·법적 장애다.[55]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거버넌스 고려사항: 역할·책임·의사결정·조정 메커니즘의 명확화, 신뢰·책무성·지속가능성 확보.[56]
- 법적 고려사항: ① 데이터 공유 조건(기밀 데이터는 영업비밀·비밀유지 항변 가능성, 개인정보에 대한 GDPR이 규정하는 안전장치 필요)과 Open Data 지침·Data Act·Data Governance Act 검토, ② 각 운영자의 권한·법적 위임 여부 분석.[57]
- 운영상 고려사항: 데이터 접근(부문별 스키마 대부분이 국제표준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 부문 간 교환이 특히 곤란), 상호운용성, 분쟁해결(관할별 상이한 제목·명칭·권리자로 인한 문제상황 관리), 재해복구 등.[58]
- 기술적 고려사항: 확장성·성능,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ML·AI, 분산원장기술(DLT), 오픈소스 활용 등.[59]

53. EUIPO 보고서, 4.4.1~4.4.3; Figures 15·16; Table 7.
54. EUIPO 보고서, 4.4.
55. EUIPO 보고서, 5.1; Figure 17.
56. EUIPO 보고서, 5.2 Governance considerations.
57. EUIPO 보고서, 5.3 Legal considerations (A·B).
58. EUIPO 보고서, 5.4 Operational considerations (A~D).
59. EUIPO 보고서, 5.5 Technical considerations (A~C).

3. 시사점

본 보고서는 CopyrightView를 새로운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나 기존 시스템의 대체물이 아니라, 국가별 · 부문별 그리고 EU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 정보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을 촉진하는 '연합형 투명성 계층(federated transparency layer)'으로 제안하고자 한다.[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방법론적 대표성의 한계다. 현장 조사는 31개 기관 면접에 기반한 탐색적 표본으로, 본 보고서 자체적으로도 연구 결과를 정량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61] 또한 본 보고서는 무방식주의 하에서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술중립성 원칙이 다수의 병존 표준과 불균등한 채택을 초래했다는 진단[62]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규범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기술적 조치들과 연동하는 규범적 방안이 기술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선 규범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의 시장규범 우선 조성 의지가 강력한 나라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 국가이기도 하다.[63] 그러나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고자 하는 EU조차도 기술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규범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규범 논의에 있어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법제 기반의 차이에 대한 고려다. 본 보고서의 논의는 CRM 지침 제24조(고유 식별자 · 국제표준 사용 의무), CDSM 지침 제4조(TDM 옵트아웃), AI Act 제53조(GPAI 저작권 준수 정책) 등 EU 법의 명시적 의무를 전제한다.[64]

---

60. EUIPO 보고서, Conclusion.
61. EUIPO 보고서, 1.4.2 Limitations of the findings.
62. EUIPO 보고서, Executive Summary – Part 2; §2.1.
63.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5년 1월 제정되었으며, 1년 뒤인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다. EU의 AI 법(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3 March 202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COM(2021)0206 – C9-0146/2021 – 2021/0106(COD)))이 2024년 8월 마련되었으나, 2025년 8월부터 범용 AI(General Purpose AI)에 대한 규정만 시행되었고, 고위험 AI 시스템(High-Risk AI Systems)에 대한 규정은 2027년 12월, 고위험 제품에 대한 규정은 2028년 8월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규제법의 전면 시행은 우리나가가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다.
64. EUIPO 보고서, 2.1.

한국은 저작권법상 등록제도를 운영하나 그 법적 효과 · 범위가 EU 및 미국(소송 전 등록 요건)과 다르고, TDM 예외나 AI 학습데이터 관련 법제가 아직 정비 과정에 있으므로, 인프라 설계에 앞서 이러한 규범적 차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인프라의 활용과 거버넌스 조정이다. 한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부, 다수 신탁관리단체(음악 · 어문 · 방송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병존한다. 본 보고서가 강조하듯 새로운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보다 기존 시스템을 존중하는 연합형 접근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原) 데이터 제공자에게 책임을 유지시키면서 상호주의 · 중복제거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설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정합성이다. 이용데이터 · 저작자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 목적제한 · 국경 간 이전 안전장치 등의 쟁점을 수반한다.[65]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이전 규제와의 정합성 검토가 데이터 공유 조건 설계의 필수 전제가 된다.

넷째, 국제표준 채택 및 상호운용성 확보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제고를 위해서는 ISWC · ISRC · ISNI · ISCC 등 국제 식별자의 국내 채택률을 높이고, 부문별 스키마를 국제 스키마와 매핑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식별자는 접근가능한 레지스트리와 결합되어야 실효성을 가지며, 표준 채택은 데이터 정제 · 조정 노력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AI 거버넌스와의 연계 및 단계적 접근이다. GenAI 시대의 옵트아웃 표시 및 집행, 학습데이터 출처 문서화는 한국의 AI 정책과 직결되는 과제다. 다만 본 보고서가 권고하듯[66] 명확한 미션과 소수의 활용사례(예: 연락처 정보, 중복제거)를 우선 정의하고, 메타데이터 관행 · 식별자 체계가 성숙한 부문(예: 음악)이나 소규모 데이터셋 시범사업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 점진적 접근이 실효적일 것이다.

CopyrightView에 대하여는 법적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67] 기대도 있지만, 저작권 정보에 접근하거나 상호 대조하는 시스템이 초래할 데이터 정확성 · 완전성 · 책임 문제에 대하여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

65. EUIPO 보고서, 2.1(GDPR); §5.3(A).

66. EUIPO 보고서, 4.1.3 Moving forward with CopyrightView.

67. 회원국별로 다른 저작권 메타데이터 처리 방식, GDPR과의 관계, 소프트웨어 소유권 귀속(개발자 vs 고용주) 등 공통 쟁점에 대해 최신 법률 조사 · 분석을 제공함으로서 법적 파편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